

2026 국가예방접종 지침 코로나19 변경 사항

구분	개정안	비고
p.138 ~ 141.	IV. 계약 및 기준 3. 실시기준 1) 대상자 • 26-27절기 인플루엔자 대상자 - 1961년 12월 31일 이전 출생자(65세) - 생후 6개월 이상 면역저하자 및 감염취약시설 입원·입소자 (16). 코로나바이러스감염증-19 1. 접종 대상 - 65세 이상 (1961.12.31. 이전 출생자) - 생후 6개월 이상 면역저하자 면역저하자 범위 • (생후 6개월~4세) - 심각한 면역저하자 : 고용량 스테로이드(prednisone 기준 20mg/일 또는 2mg/kg/일 이상)를 장기간(14일 이상) 사용하는 경우, 혈액암 등 항암치료 중인 경우, 면역억제제 치료를 받고 있는 경우, 장기이식환자, 중증면역결핍질환 및 HIV 감염 등 - 골수 또는 조혈모세포이식, 또는 키메라 항원 T 세포(CAR-T) 요법을 받고 있는 경우 - 만성폐질환, 만성심장질환, 만성간질환, 만성신질환, 신경-근육질환 - 중증뇌성마비 또는 다운 증후군(삼염색체증 21)과 같이 일상생활에 자주 도움이 필요한 장애 - 이 외에도, 상기 기준에 준하는 면역저하자 영유아(6개월~4세)로서 접종이 필요하다고 판단되는 경우 의사소견에 따라 접종 가능 • (5세 이상) - 종양 또는 혈액암으로 항암 치료를 받고 있는 경우 - 장기이식 수술을 받고 면역억제제를 복용 중인 경우 - 조혈모세포이식 후 3년 이내인 환자 또는 이식 후 3년 이상 경과한 경우라도 면역억제제 치료를 받는 경우 - 일차(선천) 면역결핍증(항체결핍, DiGeorge syndrome, Wiskott-Aldrich syndrome 등) - 고용량의 코르티코스테로이드 또는 면역을 억제할 수 있는 약물로 치료 중인 경우 - 이외에도, 상기 기준에 준하는 면역저하자로서 접종이 필요하다고 판단되는 경우 의사소견에 따라 접종 가능 - 생후 6개월 이상 감염취약시설 입원·입소자 감염취약시설 범위 • 요양병원: 「의료법」제3조제2항제3호에 따름 • 요양시설: 「노인복지법」제34조와 동법 제38조제1항제3호 해당 시설 ※ 노인의료복지시설인 노인요양시설 및 노인요양공동생활가정, 재가노인복지시설 중 단기보호기관 • 노숙인 생활시설: 『사회복지시설 관리 안내(최신판)』의 사회복지시설 종류 중 생활시설에 따름 ※ 노숙인자활시설, 노숙인재활시설, 노숙인요양시설 • 장애인 생활시설: 『사회복지시설 관리 안내(최신판)』의 사회복지시설 종류 중 생활시설에 따름 ※ 장애유형별거주시설, 중증장애인가주시설, 장애영유아거주시설, 장애인단기거주시설, 장애인공동생활가정, 피해장애인쉼터, 피해장애아동쉼터 • 정신의료기관: 「정신건강복지법」제3조제5호의 정신의료기관 중 보호병동(폐쇄병동) 운영기관 ※ 보호병동(폐쇄병동) 및 개방병동 재원환자까지 포함 ※ 정신의료기관이 종합병원(상급종합병원)을 포함한 병원급 의료기관인 경우, 접종 대상은 병원급 정신건강의학과와 폐쇄병동과 개방병동 재원환자 포함	◦ 실시기준 내용 전체 변경

구분	개정안	비고																							
	• 정신요양시설 및 정신재활시설: 시설에 입소하여 숙박 등을 하면서 생활(거주)하는 시설(생활시설·종합시설), 하루 중 일정 시간만 이용하는 시설은 제외 ※ 정신요양시설, 정신재활시설(생활시설, 공동생활가정, 지역사회전환시설, 중독자 재활시설, 종합시설)																								
	2. 접종 횟수 - 생후 6개월~11세 고위험군의 경우 과거 접종 여부에 따라 아래와 같이 접종 ※ 과거 접종한 백신과 무관하게 모더나 백신(12세 미만 용)으로 접종 ※ 면역저하자의 경우 기초접종 완료 후 6개월(최소 3개월) 간격 매년 2회 접종 <table><tr><th>과거 접종 여부</th><th>과거 접종 백신</th><th>최소접종간격</th><th>접종</th></tr><tr><td>과거 접종력이 없는 경우</td><td>-</td><td>4~8주</td><td>2회 접종으로 기초접종 완료</td></tr><tr><td rowspan="2">과거 1회 접종력이 있는 경우</td><td>화이자</td><td>3주, 8주</td><td>이후 매년 1회(면역저하자 2회) 접종</td></tr><tr><td>모더나</td><td>4~8주</td><td>1회 접종으로 기초접종 완료</td></tr><tr><td>과거 2회 접종력이 있는 경우</td><td>화이자</td><td>8주</td><td>이후 매년 1회(면역저하자 2회) 접종</td></tr><tr><td>기초접종 완료자 (모더나 2회, 화이자 3회)</td><td>모더나 화이자</td><td>3개월</td><td>매년 1회(면역저하자 2회) 접종</td></tr></table> - 12세 이상 고위험군 매년 1회 접종, 면역저하자는 6개월(최소 3개월) 간격 매년 2회 접종 <참고> 코로나19 예방접종 연령 기준 • 절기 예방접종 사업 대상 연령은 사업 시작 연도를 기준으로 함 (예시) 2026-2027절기: 2026년 기준 65세 이상(1961.12.31. 이전 출생자) • 백신 실시기준에 따른 연령은 대상자의 생년월일에 따른 나이를 기준으로 함 (예시) 2026년 11월 30일 기준, 12세 미만(2014.12.1. 이후 출생자)	과거 접종 여부	과거 접종 백신	최소접종간격	접종	과거 접종력이 없는 경우	-	4~8주	2회 접종으로 기초접종 완료	과거 1회 접종력이 있는 경우	화이자	3주, 8주	이후 매년 1회(면역저하자 2회) 접종	모더나	4~8주	1회 접종으로 기초접종 완료	과거 2회 접종력이 있는 경우	화이자	8주	이후 매년 1회(면역저하자 2회) 접종	기초접종 완료자 (모더나 2회, 화이자 3회)	모더나 화이자	3개월	매년 1회(면역저하자 2회) 접종	
과거 접종 여부	과거 접종 백신	최소접종간격	접종																						
과거 접종력이 없는 경우	-	4~8주	2회 접종으로 기초접종 완료																						
과거 1회 접종력이 있는 경우	화이자	3주, 8주	이후 매년 1회(면역저하자 2회) 접종																						
	모더나	4~8주	1회 접종으로 기초접종 완료																						
과거 2회 접종력이 있는 경우	화이자	8주	이후 매년 1회(면역저하자 2회) 접종																						
기초접종 완료자 (모더나 2회, 화이자 3회)	모더나 화이자	3개월	매년 1회(면역저하자 2회) 접종																						
	3. 접종 백신 용량 및 투여 방법 - (12세 이상) 매년 1회 접종(면역저하자 2회) 접종(최소 접종간격: 3개월(90일)) <table><tr><th>백신</th><th>용량</th><th>접종 방법</th><th>접종 부위</th></tr><tr><td>화이자 XFG 백신</td><td>0.3ml/30μg</td><td>근육주사</td><td>삼각근</td></tr><tr><td>모더나 XFG 백신</td><td>0.5ml/50μg</td><td>근육주사</td><td>삼각근</td></tr></table> - (6개월~11세 고위험군) 기초접종 완료자 1회(면역저하자 2회) 접종(최소 접 종간격: 3개월(90일)) ※ 기초접종(2~3회) 미완료자의 경우, 기초접종 완료 후 매년 1회(면역저하자 2회) 접종 <table><tr><th>백신</th><th>용량</th><th>접종 방법</th><th>접종 부위</th></tr><tr><td>모더나 XFG 백신</td><td>0.25ml/25μg</td><td>근육주사</td><td>삼각근 (또는 대퇴부전외측)</td></tr></table> ※ 생후 6~35개월의 경우 근육량이 부족할 경우 대퇴부전외측 주사 가능	백신	용량	접종 방법	접종 부위	화이자 XFG 백신	0.3ml/30μg	근육주사	삼각근	모더나 XFG 백신	0.5ml/50μg	근육주사	삼각근	백신	용량	접종 방법	접종 부위	모더나 XFG 백신	0.25ml/25μg	근육주사	삼각근 (또는 대퇴부전외측)				
백신	용량	접종 방법	접종 부위																						
화이자 XFG 백신	0.3ml/30μg	근육주사	삼각근																						
모더나 XFG 백신	0.5ml/50μg	근육주사	삼각근																						
백신	용량	접종 방법	접종 부위																						
모더나 XFG 백신	0.25ml/25μg	근육주사	삼각근 (또는 대퇴부전외측)																						
	4. 사업 기간 - 사업 첫날 접종자 쏠림 방지를 위해 연령별 사업 시작일을 구분하여 시행 ※ 접종 시작일에 따라 면역저하자 및 감염취약시설 입원·입소자, 어르신(75세 이상), 어르신(70~74세), 어르신(65~69세) 순으로 시행																								

구분	개정안	비고
	5. 어르신 사업기간 예외인정기준 - 65세 이상 어르신의 경우 접종 편의 등을 고려하여 예외인정기준에 해당하는 적합한 사유가 있는 경우, 사업 시작(75세 이상 접종 시작일) 이후부터 연령 구분없이 접종 가능 - 예외인정기준 접종은 어르신(65~69세) 접종이 시작되면 더 이상 적용되지 않음 <65세 이상 어르신 사업기간 예외인정기준> • (지역특성) 섬·벽지지역*이 포함된 시군구에 거주(주민등록상 거주지)하는 경우 * 「공공보건의료에 관한 법률」 제12조의 의료취약지, 「국민건강보험법 시행령」 제45조의 보험료 경감 대상 지역 • (당일진료) 고혈압, 당뇨 등 기저질환이나 갑작스럽게 발생한 질환 등으로 당일진료가 발생한 경우 • (방문 예방접종) 지방자치단체의 장이 거동불편자 등을 대상으로 방문 예방접종이 필요하다고 판단하여 보건소의 관리하에 안전한 예방접종 환경을 확보한 후 방문하여 접종하는 경우 • (장애인) 「장애인복지법」 제2조제2항에 해당하는 장애(15종), 장애의 정도가 심한 장애인, 장애의 정도가 심하지 않으나 의료기관 재방문이 어려운 장애인 해당 6. 예진 의사 1인당 100명 제한 - 예진 의사 1인당 1일 최대 접종 인원을 100명으로 제한 ※ 접종 인원 제한은 인플루엔자/코로나19 접종 건수를 구분하여 각각 100명 접종 계산 ※ 유료 접종, 지자체 자체 사업, 사업기간 예외인정기준 접종, 다른 NIP 등의 경우 접종 인원 제한에 포함되지 않음 ※ 방문접종의 경우 시스템 ‘방문접종 관리’ 메뉴에 업로드한 방문접종 일정에는 접종 인원 제한이 적용되지 않음 교차 접종 - (12세 미만 고위험군) 과거 화이자 백신을 접종한 경우, 모더나 백신 절반 용량 (0.25mL)으로 교차접종 가능 - (12세 이상) 제조사가 다른 백신으로 교차접종 가능 금기 및 주의사항 1. 예방접종 금기사항 - 이전에 코로나19 백신 접종 후 아나필락시스 반응이 확인된 경우, 이전 백신과 동일한 종류의 백신으로 접종하는 것을 금기 - 코로나19 백신	

구분	개정안		비고
	백신	내용	
	화이자·모더나	- polyethylene glycol(PEG) 또는 관련 성분(molecules)에 중증 알레르기 반응 발생 이력이 있는 경우 접종 금기대상에 포함 ※ 트리스(히드록시메틸) 아미노메탄, 트리스 염산염 성분에 중증 알레르기 반응 발생 이력이 있는 경우 모더나백신 접종 금기대상에 포함 ※ 트로메타민*, 트리스 염산염 성분에 중증 알레르기반응 발생 이력이 있는 경우 화이자백신 접종금기대상에 포함 * ‘트리스(히드록시메틸) 아미노메탄’과 ‘트로메타민’은 동일성분임	
	노바백스	- polysorbate에 중증 알레르기 반응 발생 이력이 있는 경우 접종 금기대상에 포함 ※ PEG와 polysorbate는 구조적으로 관련되어 있어 교차과민 반응을 일으킬 수 있으므로 주의 필요	
2. 예방접종 주의사항 - 중등증 또는 중증 급성질환을 앓고 있는 경우, 상태가 호전된 후 접종 - 발열(37.5℃ 이상) 등 급성병증이 있는 경우, 증상이 없어질 때까지 백신 접종 연기 - 코로나19 백신(mRNA 백신, 노바백스 백신) 접종 후 심근염·심낭염 발생이 확인된 경우 안전성에 대한 근거가 마련될 때까지 코로나19 백신 접종 연기 - 이전 접종 후 심근염·심낭염 의심 증상이 발생하여 이상반응 신고하였으나 검사 미실시 등으로 판정 불가 대상이 된 경우와 접종 연기 대상인 경우, 안전성에 대한 근거가 마련될 때까지 코로나19 백신 접종 연기			
다른 백신과의 접종 간격 - 인플루엔자 백신과 코로나19 백신은 동시접종으로 인한 면역 간섭과 안전성의 우려가 없는 것으로 확인되었으므로 동시접종 가능 - 인플루엔자 백신 외 다른 국가예방접종 백신과의 권장되는 접종 간격에 제한을 둘 근거는 없음 - 엠폭스 백신인 진네오스 백신은 코로나19 백신과 접종간격에 제한을 두지 않음 ※ 다만, 청소년 및 젊은 성인 남성은 두 백신 간 접종 간격을 4주 정도 두는 것을 고려할 수 있으나 코로나19 또는 엠폭스로 인한 중증질환 위험이 증가하는 경우 접종을 미루어서는 안됨 ※ 진네오스 백신 접종 후 심근염·심낭염 발생위험은 알려져 있지 않으나, ACAM2000 백신, 코로나19 백신은 접종 후 심근염·심낭염이 관찰됨(6개월~4세)			
특수 상황에서의 접종 1. 면역저하자 - 면역억제치료 시작 2주 전까지 코로나19 백신 접종이 완료되는 것이 좋으나 만약 가능하지 않은 경우에는 면역억제치료를 받은 대상자도 코로나19 예방접종이 가능함. 코로나19 예방접종 완료를 위해 면역억제치료의 연기 여부는 담당의사와 상의하여 결정 ※ 면역저하자의 경우 코로나19 백신의 효과가 충분히 나타나지 않을 수 있음			

구분	개정안	비고																												
	2. 출혈성 질환 - 출혈성 질환을 가지고 있는 환자도 코로나19 예방접종 가능, 환자가 응고장애 약물을 복용하거나 치료를 받는 경우(예: 혈우병) 약물 투여 또는 치료 직후 접종함 3. 항응고제 복용 - 항응고제 복용자의 치료상태가 안정적일 때 코로나19 예방접종 가능, 와파린 복용자의 경우 최근 INR(International normalized ratio)이 치료범위의 상한선 미만일 경우 접종함 ※ 혈액 응고장애를 앓고 있거나 항응고제를 복용 중인 대상자의 경우 접종 시 작은 주사바늘(23G 이상)을 사용하고, 접종부위를 문지르지 말며 최소 2분간 압박 필요 4. 수유부 - 코로나19 예방접종 가능 5. 임신부 - 기저질환이 있거나 임신 초기(12주 미만)인 경우는 접종 전 산모와 태아의 상태를 진찰받고 접종 6. 과거 감염 이력이 있는 경우 - 코로나19 예방접종 금기 대상이 아닌 경우 코로나19 감염력이 있더라도 접종 가능 - 다만, 최근 감염 이력이 있는 경우 자연면역을 고려하여 감염 확진일로부터 3개월 이후로 접종을 연기할 수 있으며, 코로나19 예방접종 여부 결정을 위한 코로나19 바이러스 검사 및 혈청 검사는 필요하지 않음																													
p.151 ~ 152.	IV. 계약 및 기준 2. 비용상환 7). 예외적 실시기준 (2). 조혈모세포이식 환자 <table><tr><th rowspan="2">대상</th><th rowspan="2">이식 후 1차 접종 최소 시기</th><th rowspan="2">백신</th><th colspan="5">최소 접종 간격 (■: 기초 접종, ■: 추가 접종)</th></tr><tr><th>기초 횟수</th><th>1-2차</th><th>2-3차</th><th>3-4차</th><th></th></tr><tr><td rowspan="2">코로나 바이러스 감염증-19¹²⁾</td><td rowspan="2">3~6 개월</td><td>모더나</td><td rowspan="2">3</td><td>① 4~8주 (4주)</td><td>② 8~12주 (4주)</td><td>③</td><td></td><td></td></tr><tr><td>화이자</td><td>① 3~8주 (3주)</td><td>② 8~12주 (4주)</td><td>③</td><td></td><td></td></tr></table> 12) 기초접종 3회 실시 이후 매년 6개월(최소 3개월) 간격 2회 접종한다.	대상	이식 후 1차 접종 최소 시기	백신	최소 접종 간격 (■: 기초 접종, ■: 추가 접종)					기초 횟수	1-2차	2-3차	3-4차		코로나 바이러스 감염증-19 ¹²⁾	3~6 개월	모더나	3	① 4~8주 (4주)	② 8~12주 (4주)	③			화이자	① 3~8주 (3주)	② 8~12주 (4주)	③			◦ 내용 추가
대상	이식 후 1차 접종 최소 시기				백신	최소 접종 간격 (■: 기초 접종, ■: 추가 접종)																								
		기초 횟수	1-2차	2-3차		3-4차																								
코로나 바이러스 감염증-19 ¹²⁾	3~6 개월	모더나	3	① 4~8주 (4주)	② 8~12주 (4주)	③																								
		화이자		① 3~8주 (3주)	② 8~12주 (4주)	③																								
p.267 ~ 268.	V. 부록 3. 주요 민원 3) 감염병별 주요 민원 (13) 코로나바이러스감염증-19 • 나이가 65세 이상인 면역저하자 또는 감염취약시설 입원·입소자) 면역저하자 또는 감염취약시설 입원·입소자 중에서 65세 이상 고령층은 어떤 대상으로 등록하여야 하나요? - 코로나19 예방접종등록 시스템에서 대상자를 조회한 후 면역저하자 또는 감염취약시설 입원·입소자에 해당하는 대상은 연령에 상관없이 [면역저하자] 또는 [감염취약시설 입원·입소자]를 선택하여 우선 등록하여야 합니다. 예시) 코로나19 예방접종을 위해 내원한 코로나19 면역저하자(의사가 면역저하자로 판단한 경우 포함)가 65세 이상이라면 대상 구분에서 [면역저하자]를 선택하여 접종	◦ 내용 추가																												

구분	개정안	비고
	등록을 하여야 합니다. * 보건소에서 비용상환 신청이 접수된 후에는 등록된 접종정보 변경이 불가능하니 위탁의료기관에서는 “접종 대상 구분”을 잘 확인하신 후에 등록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코로나19 백신 등록 기간 만료 후 접종 등록 방법) 코로나19 사업 종료 후 공문으로 통보받은 접종 등록 기간이 만료되어 이번 절기 시행 접종 등록이 불가능합니다. 누락된 접종 내역은 어떻게 등록할 수 있으며, 이런 경우 비용상환은 가능한가요? - 해당 절기 코로나19 ‘예방접종 사업 종료 행정 사항 안내’ 공문에 안내된 “접종 등록” 기간 만료 이후에는 아래의 경로에 따라 접종 등록만 가능하며 비용상환 신청은 되지 않습니다. 위탁의료기관에서는 접종 기록이 누락되지 않도록 접종 즉시 코로나19 예방접종등록시스템에 접종 내역을 등록하시기 바랍니다. * (코로나19 백신) [의학적 소견] → [사유] 등록 → [기타] 선택 → [저장] ⇒ 비용상환 신청이 되지 않음 ※ 조달계약 현물공급백신은 백신 회수 시 시스템과 의료기관 잔여백신 수량 일치를 위해 전산 등록 기간을 지정하여 운영 • 면역저하자는 코로나19 백신을 한 번 더 접종이 가능하다고 하는데 어떤 대상이 해당하고 어떻게 등록하여야 비용상환 신청을 할 수 있나요? - 원칙적으로 코로나19 예방접종은 매년 1회 접종을 원칙으로 합니다. 다만, 코로나19 예방접종 실시기준에 따른 ‘면역저하자’ 범위에 해당하거나 ‘의사가 면역저하자로 판단’한 경우, 이전 접종과 최소 3개월 간격을 두고 한 번 더 접종이 가능합니다. 면역저하자는 코로나19 예방접종등록 시스템의 아래 경로를 준수하여 등록이 필요합니다. * (코로나19 예방접종등록시스템) “코로나19 접종 대상자 여부” 선택 시 [면역저하자]를 선택한 후 등록하여야 접종 등록과 비용상환 신청이 가능합니다. • (조혈모세포이식 후 접종) 코로나19 백신도 조혈모세포이식 후 예방접종 비용지원이 가능한가요? - 네, 가능합니다. 조혈모세포이식환자의 코로나19 예방접종 실시기준을 준수하여 접종이 필요하며 접종시기는 조혈모세포이식 한 날로부터 3~6개월 이후 접종을 시작할 수 있습니다. 이식 후 3회 기초접종을 실시하고, 기초접종을 완료한 이후 6개월 간격으로 2회 추가접종을 실시할 수 있습니다. ※ 조혈모세포이식 후 코로나19 예방접종은 2026년 1월 1일 이후 이식한 대상에게 비용지원 가능 - 조혈모세포이식환자가 첫 접종 후 다음 해부터는 이식일로부터 3년까지 매년 2회 추가접종을 실시하며 최소 6개월 간격을 두고 접종을 시행합니다. ※ 이식일로부터 3개월 이후 기초접종을 시작하여 해당 절기에 추가접종이 모두 완료되지 않더라도, 다음 절기에는 해당 절기 백신으로 2회 추가접종을 실시함 • 조혈모세포이식 후 코로나19 예방접종을 실시한 대상인데 코로나19 예방접종등록 시스템에서 어떻게 등록해야 비용상환 받을 수 있나요? - 조혈모세포이식환자 접종을 실시한 후 코로나19 예방접종등록시스템 내 의학적 소견 [조혈모세포이식 후 접종]을 선택한 후 [이식일자]를 등록하면 비용상환 신청이 가능합니다. 이후 보건소에서는 해당 접종 내역의 실시기준 등 비용지급 적합성을 판단하고 비용 심사를 하게 되며 심사결과에 따라 비용상환 업무처리가 진행됩니다. • 조혈모세포이식 후 코로나19 예방접종을 시행하고 싶은데 위탁의료기관에서 계약 관련으로 어떠한 조치가 필요한가요? - 코로나19 예방접종사업의 위탁계약이 정상적으로 체결되어 있는 의료기관에서는 별도의 조치가 필요하지 않습니다.	

구분	개정안			비고
p.263.	V. 부록 3. 주요 민원 3) 감염병별 주요 민원 (13) 인플루엔자 [참고] 인플루엔자 국가예방접종 사업 조혈모세포이식환자 대상 접종을 위한 계약 조건			◦ 부등호 반대 표기 수정
	현재 계약 대상	조혈모세포이식 후 접종 가능 범위	추가하려는 대상의 조혈모세포이식 환자 접종을 위한 계약 조건	
	어르신	≥65세	≤64세 추가	계약: 국가예방접종(어린이 등)+교육+시행확 인증 제출
	어린이	≤64세	≥65세 추가	계약: 성인 인플 국가예방접종+교육+시행확 인증(65세 이상) 제출
	어르신· 어린이	전 연령	-	별도 계약 불필요
	임신부	-	전 연령	계약: 국가예방접종(어린이 등)+교육+시행확 인증 제출 계약: 성인 인플 국가예방접종+시행확인증 (65세 이상) 제출 ※ 임신부 계약시 수강한 성인 인플루엔자 예방접종 교육 같음
	신규	-	전 연령	계약: 국가예방접종(어린이 등)+교육+시행확 인증 제출 계약: 성인 인플 국가예방접종+교육+시행확 인증(65세 이상) 제출
	※ (어르신 계약) ≥65세 조혈모세포이식 후 접종 비용 지원(2026년 1월 1일 이후 이식한 환자) (어린이 계약) ≤64세까지 조혈모세포이식 후 접종 비용 지원 ① (생후 6개월~14세까지 어린이 인플루엔자 사업 대상) 이식일로부터 3년까지 지원 ② (15세~64세) 2026년 1월 1일 이후 이식한 환자			